

안 전 보 건 교 육 실 시 일 지

□ 교육일자 : 2021 년 03월 일

결 재				

교 육 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채용시 교육 (8시간 이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작업내용 변경시교육(2시간이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특별안전보건교육 (16시간 이상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근로자 정기교육 (월2시간이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(반기8시간이상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------------------	---	---

교 육 인 원	구분	계	남	여	교육 미 실시 사유
	대상자				
	실시자				
	미 실시자				

교 육 내 용	교육 내용의 개요		교육방법	교육시간	사용교재등
	근로자 건강진단 1. 건강진단 이란? 2. 건강진단의 종류 및 항목 3.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4. 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5.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6. 건강진단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* 국민보험공단에서 하는 지원사업		강의식	2시간	첨부자료

실시자 및 장 소	성 명	직 명	교육 장 소	

참 석 자	참 석 자	서 명	참 석 자	서 명
	- 별 첨 첨부 -			

1. 건강진단 이란?

(산안법 제129조에서 제143조(건강진단), 시행규칙 제195조~제224조, 고용노동부령 제272호)

- 건강진단

일반인을 대상으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질병을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

- 근로자 건강진단

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의학적 선별검사

- 특수건강진단

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

2. 건강진단의 종류 및 항목

1) 일반건강진단

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

② 근로자의 건강보호, 유지 및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

(a) 인정기준

-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

-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

-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

-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

-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

-그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

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한 건강진단

③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

-일반건강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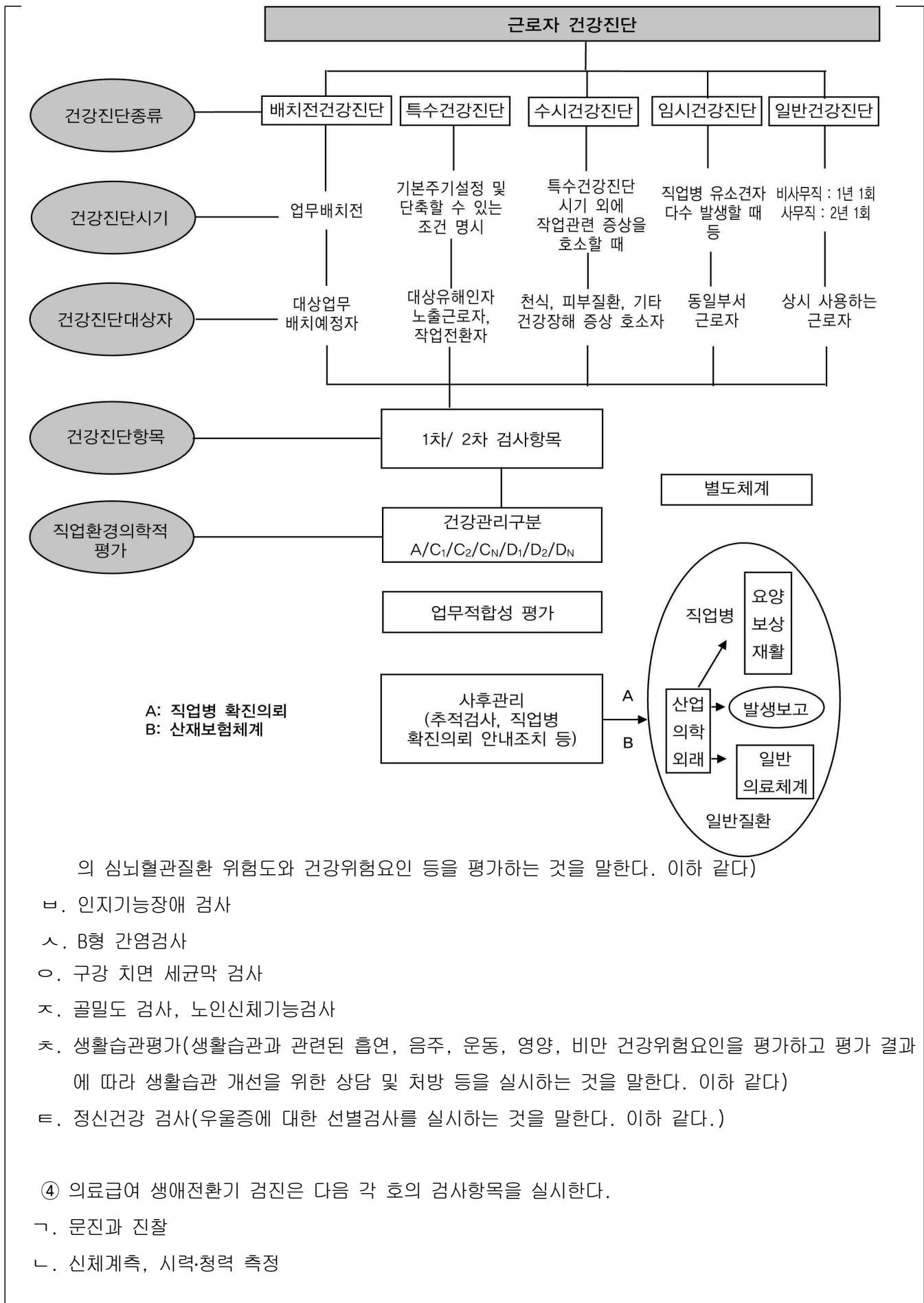
ㄱ. 문진과 진찰

ㄴ. 신체계측, 혈압측정, 시력·청력 측정

ㄷ. 흉부방사선 촬영, 요검사, 혈액검사

ㄹ. 구강검진

ㅁ.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(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(이하 “수검자” 라 한다)



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- ㄴ. 인지기능장애 검사
 - ㄷ. B형 간염검사
 - ㄹ. 구강 치면 세균막 검사
 - ㄺ. 골밀도 검사, 노인신체기능검사
 - ㄻ. 생활습관평가(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, 음주, 운동, 영양,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 - ㄼ. 정신건강 검사(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
- ④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을 실시한다.
- ㄱ. 문진과 진찰
 - ㄴ. 신체계측, 시력·청력 측정

㉔. 인지기능장애 검사

㉕. 골밀도 검사, 노인신체기능검사

㉖. 생활습관평가(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, 음주, 운동, 영양,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

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㉗. 정신건강검사(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)

⑤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

구분	검진항목	실시시기
일반 건강검진	총콜레스테롤	남성 만 24세 이상,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
	HDL 콜레스테롤	
	트리글리세라이드	
	LDL 콜레스테롤	
	B형간염 표면항원/표면항체	만 40세
	골밀도 검사	만 54, 66세 여성
	인지기능장애	만 66세 이상 2년 마다
	정신건강검사(우울증)	만 20,30,40, 50, 60, 70세
	생활습관평가	만 40, 50, 60, 70세
	노인신체기능검사	만 66, 70, 80세
구강검진	치면세균막검사	만 40세
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	골밀도 검사	만 66세 여성
	인지기능장애	만 66세 이상 2년 마다
	정신건강검사(우울증)	만 70세
	생활습관평가	만 70세
	노인신체기능검사	만 66, 70, 80세

※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에 대해 가까운 병, 의원에서 확진검사 실시

2) 특수건강진단

- ① 별표 2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,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 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
- ②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
 - (a) 인정기준?
 -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(방사선)
 -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 진단(광물성분진)
 -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(방사선)

-그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 실시한 건강진단(해당 유해인자에 한함)

③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

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.

구분	대상 유해인자	시기	주기
		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	
1	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N,N-디메틸포름아미드	1월 이내	6월
2	벤젠	2월 이내	6월
3	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	3월 이내	6월
4	석면,면분진	12월 이내	12월
5	광물성분진, 목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	12월 이내	24월
6	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	6월 이내	12월

※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'○월 이내' 라는 기간의 의미는 ○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.

예를 들어 '6월이내' 란 배치된 지 적어도 4-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.

※야간 작업자 특수검진

구분	내용
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	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
	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
실시시기 및 주기	배치전
	배치후 첫 번째 : 6개월 이내
	주기 : 12개월 *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
검사항목 (1차)	신경계 : 불면증 증상 문진
	심혈관계 : 복부둘레, 혈압, 공복혈당, 총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, HDL 콜레스테롤
	위장관계 : 관련 증상 문진
	내분비계 : 관련 증상 문진

3) 배치전건강진단

-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- ②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을 판단하고자 실시

4) 수시건강진단

-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, 직업성 피부염,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
- ②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, 피부질환, 기타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실시

5) 임시건강진단

-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, 질병 이환여부, 질병의 원인 등을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건강진단
 -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 질병의 자각,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
 -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직업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해 실시

3.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(법 시행규칙 제209조)

- ①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고,

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

- ② 건강진단기관은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학적 소견·업무수행의 적합여부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내용을 설명
-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
 -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: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
 - 특수건강진단·배치전 건강진단·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:
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·수시·배치전·임시건강진단결과표
- ④특수·수시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해당 건강진단결과표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
이 경우 건강진단 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-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주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표(별지 제84호 서식)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

4. 건강진단 결과의 사후관리(법 시행규칙 제210조)

- ①사업주는 제209조 제34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,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함
-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
- ③법 제132조제5항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”란 특수건강진단, 수시건강진단,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금지 및 제한, 작업전환, 근로시간 단축,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사업주를 말함
- ④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,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제출
- ⑤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

5.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(법 시행규칙 제241조)

- ① 사업주는 제209조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
- ②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

6. 건강진단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세부내용	과태료금액(만원)		
			1차	2차	3차이상
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75조 제4항 7호	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	10	20	30
건강진단을 할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 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키지 않은 경우	법 제175조 제5항14호		500	500	500
특정근로자 임시건강진단 실시 불이행한 경우	법 제131조 제1항		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		
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75조 제6항 3호		5	10	15
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175조 제6항 3호	가. 보고하지 않은 경우	50	150	300
		나.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300	300	300
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 불이행한 경우	법 제 132조 제4항		1000만원 이하의 벌금		
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57조 제5항 1호		100	300	500
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,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	법 제175조 제65항 3호		300	300	300

※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지원사업

1) 암환자 의료비 지원

① 암 종류별 검진안내

암의 종류	검진주기	연령 기준 등
위암	2년	만 40세 이상의 남·여
간암	6개월	만 40세 이상의 남·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
대장암	1년	만 50세 이상의 남·여
유방암	2년	만 40세 이상의 여성
자궁경부암	2년	만 20세 이상의 여성

※비고 : “간암 발생 고위험군” 이란 간경변증, B형간염 항원 양성, C형간염 항체 양성,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.

②지원대상

건강보험가입자: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
(단 1단계 검진 필수이며 암검진 방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.)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차상위 C,E해당자): 만18세 이상 암환자

③지원대상 암

건강보험가입자: 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차상위 C,E해당자): 모든 암종

④의료비 지원 한도액

건강보험가입자: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차상위 C,E해당자):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원
(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100만원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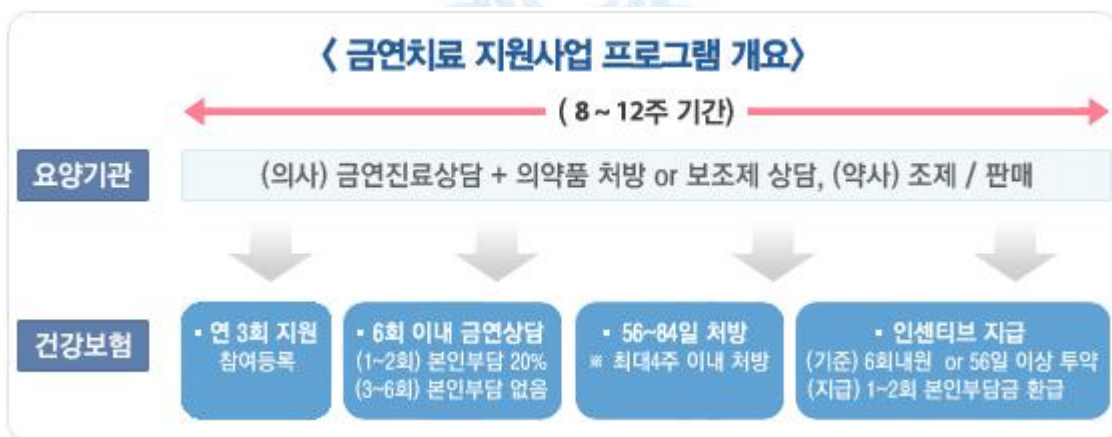
⑤지원기간: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

⑥신청 및 지급기관: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
2)금연치료지원

①사업의 개요

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
‘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’ 실시중 (’ 15.2.25.부터)
- 8주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·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
금연보조제(니코틴패치, 껌, 정제) 구입비용 지원
- 금연치료를 위한 병·의원 3회차 방문 부터 본인부담 면제(약국포함)



②제공기관 및 지원대상

(의료기관) 공단에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한 모든 병·의원, 보건소, 보건지소 등

(지원대상)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등록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에 대해 지원(1년에 3번까지 지원)

- 흡연자 1인당 최대 18회 진료·상담 및 36주 처방 가능
-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하여 1회차 지원종료

③지원내용

진료·상담: 8~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

니코틴중독 평가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 제공

금연진료·상담료: 건강보험공단에서 80% 지원 (참여자 20% 부담)

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(건강보험료 하위 20% 이하)은 진료·상담료 전액 지원

약국금연관리비

금연치료의약품, 금연보조제 등 사용안내 및 복약지도 관련 비용으로 공단에서 80% 지원 (참여자 20% 부담)

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약국금연관리료 전액 지원

3)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

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·갱신 시 신체검사(시력·청력) 면제가 가능합니다.

